「민법」[1]

(제5편제1장-제5편제8장)

- **국 가·장 소**: 일본
- **법 률 번 호**: 명치29<1896>년 법률 제89호
- **공 포 일**: 1896년 4월 27일
- **개 정 일**: 2019년 6월 14일

원문	번역문
第五編 相続	**제5편 상속**
第一章 総則	**제1장 총칙**
第八百八十二条（相続開始の原因） 相続は、死亡によって開始する。	**제882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第八百八十三条（相続開始の場所） 相続は、被相続人の住所において開始する。	**제883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第八百八十四条（相続回復請求権）	**제884조**(상속회복청구권)

[1] 이 번역본은 2018년 작성한 것입니다.

相続回復の請求権は、相続人又はその法定代理人が相続権を侵害された事実を知った時から五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相続開始の時から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개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第八百八十五条（相続財産に関する費用） 相続財産に関する費用は、その財産の中から支弁する。ただし、相続人の過失によるものは、この限りでない。 ２　前項の費用は、遺留分権利者が贈与の減殺によって得た財産をもって支弁することを要しない。	**제885조**(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①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그 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상속인의 과실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비용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감쇄(減殺)로 얻은 재산으로 지급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第二章　相続人	**제2장　상속인**
第八百八十六条（相続に関する胎児の権利能力） 胎児は、相続については、既に生まれたものとみなす。 ２　前項の規定は、胎児が死体で生まれたときは、適用しない。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① 태아는 상속에 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은 태아가 출생 전 사망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八百八十七条（子及びその代襲	**제887조**(자녀 및 대습자 등의 상

者等の相続権) 被相続人の子は、相続人となる。 2 被相続人の子が、相続の開始以前に死亡したとき、又は第八百九十一条の規定に該当し、若しくは廃除によって、その相続権を失ったときは、その者の子がこれを代襲して相続人となる。ただし、被相続人の直系卑属でない者は、この限りでない。 3 前項の規定は、代襲者が、相続の開始以前に死亡し、又は第八百九十一条の規定に該当し、若しくは廃除によって、その代襲相続権を失っ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속권) ① 피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이 된다. ②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때, 또는 제891조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박탈로 그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의 자녀가 이를 대습하여 상속인이 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규정은 대습자가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제891조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박탈로 그 대습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八百八十八条 削除	**제888조** 삭제
第八百八十九条(直系尊属及び兄弟姉妹の相続権) 次に掲げる者は、第八百八十七条の規定により相続人となるべき者がない場合には、次に掲げる順序の順位に従って相続人となる。 一 被相続人の直系尊属。ただし、親等の異なる者の間で	**제889조**(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상속권)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887조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다만, 부모 등이 다른 자는 가까

は、その近い者を先にする。 二 被相続人の兄弟姉妹 2 第八百八十七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第二号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운 자가 우선한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② 제887조제2항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八百九十条（配偶者の相続権） 被相続人の配偶者は、常に相続人とな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八百八十七条又は前条の規定により相続人となるべき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と同順位とする。	**제890조**(배우자의 상속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에 제887조 또는 제889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와 동순위가 된다.
第八百九十一条（相続人の欠格事由） 次に掲げる者は、相続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一 故意に被相続人又は相続について先順位若しくは同順位にある者を死亡するに至らせ、又は至らせようとしたために、刑に処せられた者 二 被相続人の殺害されたことを知って、これを告発せず、又は告訴しなかった者。ただし、その者に是非の弁別がないとき、又は殺害者が自己の配偶者若しくは直系血族で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	**제891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에 대하여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르게 하려고 하여 형에 처한 자 2. 피상속인이 살해되었음을 알고 이를 고발하지 아니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자에게 시비의 변별이 없는 때 또는 살해자가 자기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い。 三 詐欺又は強迫によって、被相続人が相続に関する遺言をし、撤回し、取り消し、又は変更することを妨げた者 四 詐欺又は強迫によって、被相続人に相続に関する遺言をさせ、撤回させ、取り消させ、又は変更させた者 五 相続に関する被相続人の遺言書を偽造し、変造し、破棄し、又は隠匿した者	3.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철회, 취소 또는 변경하게 한 자 5. 상속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第八百九十二条（推定相続人の廃除） 遺留分を有する推定相続人（相続が開始した場合に相続人となるべき者をいう。以下同じ。）が、被相続人に対して虐待をし、若しくはこれに重大な侮辱を加えたとき、又は推定相続人にその他の著しい非行があったときは、被相続人は、その推定相続人の廃除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892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유류분을 가지는 추정상속인(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이에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또는 추정상속인에게 그 밖의 현저한 비행이 있는 때에 피상속인은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第八百九十三条（遺言による推定相続人の廃除） 被相続人が遺言で推定相続人を廃除する意思を表示したとき	**제893조**(유언에 의한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추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의사를

は、遺言執行者は、その遺言が効力を生じた後、遅滞なく、その推定相続人の廃除を家庭裁判所に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推定相続人の廃除は、被相続人の死亡の時にさかのぼ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표시한 때에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은 상속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八百九十四条（推定相続人の廃除の取消し） 被相続人は、いつでも、推定相続人の廃除の取消し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前条の規定は、推定相続人の廃除の取消しについて準用する。	**제894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 ① 피상속인은 언제든지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93조의 규정은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八百九十五条（推定相続人の廃除に関する審判確定前の遺産の管理） 推定相続人の廃除又はその取消しの請求があった後その審判が確定する前に相続が開始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親族、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って、遺産の管理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推定相続人の廃除の遺言があっ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895조**(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에 관한 심판확정 전 유산의 관리) ①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또는 그 취소 청구가 있은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가정재판소는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유산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추정상속인의 상속권 박탈 유언이 있는 때에도 같다.

2　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が遺産の管理人を選任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정재판소가 유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三章　相続の効力	**제3장 상속의 효력**
第一節　総則	**제1절 총칙**
第八百九十六条（相続の一般的効力） 相続人は、相続開始の時から、被相続人の財産に属した一切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ただし、被相続人の一身に専属したものは、この限りでない。	**제896조**(상속의 일반적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八百九十七条（祭祀に関する権利の承継） 系譜、祭具及び墳墓の所有権は、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慣習に従って祖先の祭祀を主宰すべき者が承継する。ただし、被相続人の指定に従って祖先の祭祀を主宰すべき者があるときは、その者が承継する。 2　前項本文の場合において慣習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同項の権利を承継すべき者は、家庭裁	**제897조**(제사에 관한 권리의 승계) ① 족보, 제구(祭具) 및 분묘의 소유권은 제8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여야 하는 자가 승계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지정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여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승계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관습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권리를 승계하여야 하는

判所が定める。	자는 가정재판소가 정한다.
第八百九十八条（共同相続の効力） 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相続財産は、その共有に属する。	**제898조**(공동상속의 효력)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
第八百九十九条 各共同相続人は、その相続分に応じて被相続人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제899조**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二節 相続分	**제2절 상속분**
第九百条（法定相続分） 同順位の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相続分は、次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一 子及び配偶者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子の相続分及び配偶者の相続分は、各二分の一とする。 二 配偶者及び直系尊属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続分は、三分の二とし、直系尊属の相続分は、三分の一とする。 三 配偶者及び兄弟姉妹が相続人であるときは、配偶者の相	**제900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인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 그 상속분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자녀 및 배우자가 상속인인 때에 각각의 상속분은 각 2분의1로 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때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3분의2로, 직계존속의 상속분은 3분의1로 한다. 3.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때에 배우자의 상속분

続分は、四分の三とし、兄弟姉妹の相続分は、四分の一とする。 四 子、直系尊属又は兄弟姉妹が数人あるときは、各自の相続分は、相等しいものとする。ただし、父母の一方のみ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は、父母の双方を同じくする兄弟姉妹の相続分の二分の一とする。	은 4분의3으로,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4분의1로 한다. 4. 자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여럿인 때에 각각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다만, 부모의 일방만 동일한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부모 양방이 동일한 형제자매의 상속분의 2분의1로 한다.
第九百一条（代襲相続人の相続分） 第八百八十七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相続人となる直系卑属の相続分は、その直系尊属が受けるべきであったものと同じとする。ただし、直系卑属が数人あるときは、その各自の直系尊属が受けるべきであった部分について、前条の規定に従ってその相続分を定める。 ２ 前項の規定は、第八百八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兄弟姉妹の子が相続人とな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01조**(대습상속인의 상속분) ① 제88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은 그 직계존속의 상속분과 같다. 다만, 직계비속이 여럿인 때에는 각각의 직계존속이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900조에 따라 그 상속분을 정한다. ② 제1항 규정은 제889조제2항에 따라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二条（遺言による相続分の指定）	**제902조**(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被相続人は、前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遺言で、共同相続人の相続分を定め、又はこれを定めることを第三者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被相続人又は第三者は、遺留分に関する規定に違反することができない。	① 피상속인은 제900조 및 제90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 또는 제3자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못한다.
2 被相続人が、共同相続人中の一人若しくは数人の相続分のみを定め、又はこれを第三者に定めさせたときは、他の共同相続人の相続分は、前二条の規定により定める。	②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럿의 상속분만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정하도록 한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제900조 및 제901조 규정에 따라 정한다.
第九百三条（特別受益者の相続分） 共同相続人中に、被相続人から、遺贈を受け、又は婚姻若しくは養子縁組のため若しくは生計の資本として贈与を受けた者があるときは、被相続人が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有した財産の価額にその贈与の価額を加えたものを相続財産とみなし、前三条の規定により算定した相続分の中からその遺贈又は贈与の価額を控除した残額をもってその者の相続分とする。	**제903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거나 혼인이나 양자관계를 위하여 또는 생계 자본으로서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에 보유한 재산 가액에 그 증여 가액을 더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 중에서 그 유증 또는 증여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遺贈又は贈与の価額が、相続	② 수유자(受遺者) 또는 유증자

分の価額に等しく、又はこれを超えるときは、受遺者又は受贈者は、その相続分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 ３　被相続人が前二項の規定と異なった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表示は、遺留分に関する規定に違反しない範囲内で、その効力を有する。	는 유증 또는 증여 가액이 상속분의 가액과 동등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그 상속분을 받지 못한다. ③ 피상속인이 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그 의사표시는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효력을 가진다.
第九百四条 前条に規定する贈与の価額は、受贈者の行為によって、その目的である財産が滅失し、又はその価格の増減があったときであっても、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なお原状のままであるものとみなしてこれを定める。	**제904조** 제903조의 증여 가액은 수증자의 행위로 그 목적인 재산이 멸실되거나 그 가격에 증감이 있는 때라도 상속을 개시할 때에 원상인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정한다.
第九百四条の二（寄与分） 共同相続人中に、被相続人の事業に関する労務の提供又は財産上の給付、被相続人の療養看護その他の方法により被相続人の財産の維持又は増加について特別の寄与をした者があるときは、被相続人が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有した財産の価額から共同相続人の協議で定めたその者の寄与分を控除したものを相続	**제904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동의 제공 또는 재산상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때에 보유한 재산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財産とみなし、第九百条から第九百二条までの規定により算定した相続分に寄与分を加えた額をもってその者の相続分とする。	재산으로 보고, 제900조부터 제9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액수를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前項の協議が調わないとき、又は協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同項に規定する寄与をした者の請求により、寄与の時期、方法及び程度、相続財産の額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寄与分を定める。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동항의 기여자의 청구로써 기여 시기,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액,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3 寄与分は、被相続人が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有した財産の価額から遺贈の価額を控除した残額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③ 기여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第二項の請求は、第九百七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請求があった場合又は第九百十条に規定する場合にすることができる。	④ 제2항의 청구는 제907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제910조의 경우에 할 수 있다.
第九百五条（相続分の取戻権）	**제905조**(상속분의 회복권)
共同相続人の一人が遺産の分割前にその相続分を第三者に譲り渡したときは、他の共同相続人は、その価額及び費用を償還して、その相続分を譲り受けることができる。	①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유산의 분할 전에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 및 비용을 상환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2 前項の権利は、一箇月以内に	② 제1항의 권리는 1개월 내에

行使しなければならない。	행사하여야 한다.
第三節 遺産の分割	**제3절 유산의 분할**
第九百六条（遺産の分割の基準） 遺産の分割は、遺産に属する物又は権利の種類及び性質、各相続人の年齢、職業、心身の状態及び生活の状況その他一切の事情を考慮してこれをする。	**제906조**(유산 분할의 기준) 유산은 유산에 속한 물건 또는 권리의 종류 및 성질, 각 상속인의 연령, 직업, 심신 상태 및 생활 상황,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한다.
第九百七条（遺産の分割の協議又は審判等） 共同相続人は、次条の規定により被相続人が遺言で禁じた場合を除き、いつでも、その協議で、遺産の分割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07조**(유산 분할의 협의 또는 심판 등) ① 공동상속인은 제90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그 협의로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
2 遺産の分割について、共同相続人間に協議が調わないとき、又は協議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は、各共同相続人は、その分割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② 유산 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재판소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前項の場合において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期間を定めて、遺産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その分割を禁ずることができる。	③ 제2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第九百八条（遺産の分割の方法の指定及び遺産の分割の禁止） 被相続人は、遺言で、遺産の分割の方法を定め、若しくはこれを定めることを第三者に委託し、又は相続開始の時から五年を超えない期間を定めて、遺産の分割を禁ずることができる。	**제908조**(유산 분할 방법의 지정 및 유산 분할 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유산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상속을 개시한 때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유산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第九百九条（遺産の分割の効力） 遺産の分割は、相続開始の時にさかのぼ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ただし、第三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제909조**(유산 분할의 효력) 유산 분할은 상속을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第九百十条（相続の開始後に認知された者の価額の支払請求権） 相続の開始後認知によって相続人となった者が遺産の分割を請求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他の共同相続人が既にその分割その他の処分をしたときは、価額のみによる支払の請求権を有する。	**제910조**(상속 개시 후에 인지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상속을 개시한 후 인지로 상속인이 된 자가 유산 분할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가액에 의한 지급청구권만을 가진다.
第九百十一条（共同相続人間の担保責任）	**제911조**(공동상속인간의 담보책임)

各共同相続人は、他の共同相続人に対して、売主と同じく、その相続分に応じて担保の責任を負う。	각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등하게 그 상속분에 따라 담보의 책임을 진다.
第九百十二条（遺産の分割によって受けた債権についての担保責任） 各共同相続人は、その相続分に応じ、他の共同相続人が遺産の分割によって受けた債権について、その分割の時における債務者の資力を担保する。 ２　弁済期に至らない債権及び停止条件付きの債権については、各共同相続人は、弁済をすべき時における債務者の資力を担保する。	**제912조**(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 책임) ① 각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산 분할로 받은 채권에 대하여 그 분할 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 및 정지조건부 채권에 대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변제하여야 할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第九百十三条（資力のない共同相続人がある場合の担保責任の分担） 担保の責任を負う共同相続人中に償還をする資力のない者があるときは、その償還することができない部分は、求償者及び他の資力のある者が、それぞれその相続分に応じて分担する。ただし、求償者に過失があるときは、他の共同相続人に対して分	**제913조**(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분담) 담보의 책임을 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 그 상환할 수 없는 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 있는 자가 각각 그 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

担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	하지 못한다.
第九百十四条（遺言による担保責任の定め） 前三条の規定は、被相続人が遺言で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適用しない。	**제914조**(유언에 의한 담보책임규정) 제911조부터 제913조까지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四章 相続の承認及び放棄	**제4장 상속의 승인 및 포기**
第一節 総則	**제1절 총칙**
第九百十五条（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すべき期間） 相続人は、自己のために相続の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三箇月以内に、相続について、単純若しくは限定の承認又は放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この期間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って、家庭裁判所において伸長することができる。 2 相続人は、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する前に、相続財産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15조**(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기간) ① 상속인은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가정재판소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第九百十六条	**제916조**

相続人が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しないで死亡したときは、前条第一項の期間は、その者の相続人が自己のために相続の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起算する。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 제915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기산한다.
第九百十七条 相続人が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であるときは、第九百十五条第一項の期間は、その法定代理人が未成年者又は成年被後見人のために相続の開始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起算する。	제917조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인 때에 제915조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상속개시가 된 것을 안 때부터 기산한다.
第九百十八条（相続財産の管理） 相続人は、その固有財産におけるのと同一の注意をもって、相続財産を管理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相続の承認又は放棄を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２　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って、いつでも、相続財産の保存に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３　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が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	제918조(상속재산의 관리)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로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2항 규정에 따라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

る。	한다.
第九百十九条（相続の承認及び放棄の撤回及び取消し） 相続の承認及び放棄は、第九百十五条第一項の期間内でも、撤回することができない。 ２　前項の規定は、第一編（総則）及び前編（親族）の規定により相続の承認又は放棄の取消しをすることを妨げない。 ３　前項の取消権は、追認をすることができる時から六箇月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相続の承認又は放棄の時から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４　第二項の規定により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の取消しを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を家庭裁判所に申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19조**(상속의 승인, 포기의 철회 및 취소) ①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제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철회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규정은 제1편(총칙) 및 제4편(친족) 규정에 따라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써 소멸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 ④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가정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第二節　相続の承認	**제2절 상속의 승인**
第一款　単純承認	**제1관 단순승인**
第九百二十条（単純承認の効力） 相続人は、単純承認をしたとき	**제920조**(단순승인의 효력)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は、無限に被相続人の権利義務を承継する。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第九百二十一条（法定単純承認） 次に掲げる場合には、相続人は、単純承認をしたものとみなす。	**제921조**(법정단순승인) 다음의 경우에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一 相続人が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を処分したとき。ただし、保存行為及び第六百二条に定める期間を超えない賃貸をすることは、この限りでない。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때. 다만, 보존행위 및 제602조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二 相続人が第九百十五条第一項の期間内に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をしなかったとき。	2. 상속인이 제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三 相続人が、限定承認又は相続の放棄をした後であっても、相続財産の全部若しくは一部を隠匿し、私にこれを消費し、又は悪意でこれを相続財産の目録中に記載しなかったとき。ただし、その相続人が相続の放棄をしたことによって相続人となった者が相続の承認をした後は、この限りでない。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의 포기를 한 후에라도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또는 악의로 이를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의 승인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二款 限定承認	**제2관 한정승인**

第九百二十二条（限定承認） 相続人は、相続によって得た財産の限度においてのみ被相続人の債務及び遺贈を弁済すべきことを留保して、相続の承認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22조**(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의 변제를 보류하고 상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第九百二十三条（共同相続人の限定承認） 相続人が数人あるときは、限定承認は、共同相続人の全員が共同してのみ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23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다수인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第九百二十四条（限定承認の方式） 相続人は、限定承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第九百十五条第一項の期間内に、相続財産の目録を作成して家庭裁判所に提出し、限定承認をする旨を申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24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915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가정재판소에 제출하고 한정승인한다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第九百二十五条（限定承認をしたときの権利義務） 相続人が限定承認をしたときは、その被相続人に対して有した権利義務は、消滅しなかったものとみなす。	**제925조**(한정승인을 한 때의 권리의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 피상속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九百二十六条（限定承認者による管理） 限定承認者は、その固有財産におけるのと同一の注意をもって、相続財産の管理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第六百四十五条、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五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九百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26조**(한정승인자에 의한 관리) ① 한정승인자는 그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제9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二十七条（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する公告及び催告） 限定承認者は、限定承認をした後五日以内に、すべての相続債権者（相続財産に属する債務の債権者をいう。以下同じ。）及び受遺者に対し、限定承認をしたこと及び一定の期間内にその請求の申出をすべき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２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には、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がその期間内に申出をしないときは弁済から除斥されるべき旨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限定承認者は、知れている相続債	**제92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모든 상속채권자(상속재산에 속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및 일정 기간 내에 그 청구를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에서 제외될 것을 부기(付記)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자격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를

権者及び受遺者を除斥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限定承認者は、知れている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は、各別にその申出の催告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제외하지 못한다. ③ 한정승인자는 자격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는 각각 신고의 최고(催告)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第九百二十八条（公告期間満了前の弁済の拒絶） 限定承認者は、前条第一項の期間の満了前には、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して弁済を拒むことができる。	**제928조**(공고기간만료 전 변제의 거절)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제1항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第九百二十九条（公告期間満了後の弁済） 第九百二十七条第一項の期間が満了した後は、限定承認者は、相続財産をもって、その期間内に同項の申出をした相続債権者その他知れている相続債権者に、それぞれその債権額の割合に応じて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優先権を有する債権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제929조**(공고기간만료 후 변제) 제927조제1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동항의 신고를 한 상속채권자, 그 밖의 자격있는 상속채권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第九百三十条（期限前の債務等の	**제930조**(기한전 채무 등의 변제)

弁済) 限定承認者は、弁済期に至らない債権であっても、前条の規定に従って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条件付きの債権又は存続期間の不確定な債権は、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鑑定人の評価に従って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제929조 규정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부 채권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第九百三十一条（受遺者に対する弁済） 限定承認者は、前二条の規定に従って各相続債権者に弁済をした後でなければ、受遺者に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31조**(수유자에 대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제929조 및 제930조 규정에 따라 각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한 후에만 수유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第九百三十二条（弁済のための相続財産の換価） 前三条の規定に従って弁済をするにつき相続財産を売却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限定承認者は、これを競売に付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鑑定人の評価に従い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の価額を弁済して、その競売を止めることができる。	**제932조**(변제를 위한 상속재산 환가) 제929조부터 제9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제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경매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액을 변제하여 그 경매를 중지할 수 있다.
第九百三十三条（相続債権者及び	**제933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의

受遺者の換価手続への参加） 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は、自己の費用で、相続財産の競売又は鑑定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二百六十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환가절차 참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상속재산의 경매 또는 감정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0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第九百三十四条（不当な弁済をした限定承認者の責任等） 限定承認者は、第九百二十七条の公告若しくは催告をすることを怠り、又は同条第一項の期間内に相続債権者若しくは受遺者に弁済をしたことによって他の相続債権者若しくは受遺者に弁済を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き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第九百二十九条から第九百三十一条までの規定に違反して弁済を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情を知って不当に弁済を受けた相続債権者又は受遺者に対する他の相続債権者又は受遺者の求償を妨げない。 3　第七百二十四条の規定は、前二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34조**(부당 변제한 한정승인자의 책임 등) ① 한정승인자는 제927조의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동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29조부터 제93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 규정은 사정을 알고 부당하게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에 대한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구상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724조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三十五条（公告期間内に申出をしなかった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 第九百二十七条第一項の期間内に同項の申出をしなかった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で限定承認者に知れなかったものは、残余財産についてのみ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相続財産について特別担保を有する者は、この限りでない。	**제935조**(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 제927조제1항의 기간 내에 동 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잔여 재산에 대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 담보를 가지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九百三十六条（相続人が数人ある場合の相続財産の管理人） 相続人が数人ある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相続人の中から、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相続財産の管理人は、相続人のために、これに代わって、相続財産の管理及び債務の弁済に必要な一切の行為をする。 ３　第九百二十六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は、第一項の相続財産の管理人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第九百二十七条	**제936조**(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의 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상속인을 위하여 이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채무변제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한다. ③ 제926조부터 제935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27조제1항 중 “한정승

第一項中「限定承認をした後五日以内」とあるのは、「その相続財産の管理人の選任があった後十日以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인 후 5일 이내"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후 10일 이내"로 대체한다.
第九百三十七条（法定単純承認の事由がある場合の相続債権者） 限定承認をした共同相続人の一人又は数人について第九百二十一条第一号又は第三号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は、相続債権者は、相続財産をもっ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債権額について、当該共同相続人に対し、その相続分に応じて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제937조**(법정단순승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 1명 또는 다수에 대하여 제921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써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하여 해당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第三節 相続の放棄	**제3절 상속의 포기**
第九百三十八条（相続の放棄の方式） 相続の放棄をしようとする者は、その旨を家庭裁判所に申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38조**(상속의 포기 방식)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가정재판소에 진술하여야 한다.
第九百三十九条（相続の放棄の効力） 相続の放棄をした者は、その相続に関しては、初めから相続人	**제939조**(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상속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

とならなかったものとみなす。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九百四十条（相続の放棄をした者による管理） 相続の放棄をした者は、その放棄によって相続人となった者が相続財産の管理を始めることができるまで、自己の財産におけるのと同一の注意をもって、その財産の管理を継続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第六百四十五条、第六百四十六条、第六百五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並びに第九百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40조**(상속을 포기한 자에 의한 관리)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의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그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45조, 제646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제9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五章 財産分離	**제5장 재산분리**
第九百四十一条（相続債権者又は受遺者の請求による財産分離） 相続債権者又は受遺者は、相続開始の時から三箇月以内に、相続人の財産の中から相続財産を分離すること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相続財産が相続人の固有財産と混合しない間は、その期間の満了後も、同様とする。	**제941조**(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①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재산의 분리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합하기 전에는 그 기간 만료 후에도 같다.

2　家庭裁判所が前項の請求によって財産分離を命じたときは、その請求をした者は、五日以内に、他の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し、財産分離の命令があったこと及び一定の期間内に配当加入の申出をすべき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② 가정재판소가 제1항 청구에 따라 재산분리를 명령한 때에 그 청구인은 5일 내에 다른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재판소의 재산분리 명령 및 일정 기간 내에 배당가입을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前項の規定による公告は、官報に掲載してする。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다.
第九百四十二条（財産分離の効力） 財産分離の請求をした者及び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配当加入の申出をした者は、相続財産について、相続人の債権者に先立って弁済を受ける。	**제942조**(재산분리의 효력) 재산분리청구를 한 자 및 제941조제2항에 따라 배당가입신청을 한 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第九百四十三条（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財産の管理） 財産分離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相続財産の管理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제943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재산의 관리) ①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2　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家庭裁判所が相続財産の管理人	②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

を選任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第九百四十四条（財産分離の請求後の相続人による管理） 相続人は、単純承認をした後でも、財産分離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以後、その固有財産におけるのと同一の注意をもって、相続財産の管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家庭裁判所が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２　第六百四十五条から第六百四十七条まで並びに第六百五十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44조**(재산분리청구 후 상속인에 의한 관리) ①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후라도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후에 그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상속재산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재판소가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45조부터 제647조까지, 제650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九百四十五条（不動産についての財産分離の対抗要件） 財産分離は、不動産については、その登記をしなければ、第三者に対抗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45조**(부동산에 대한 재산분리 대항요건) 재산분리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第九百四十六条（物上代位の規定の準用） 第三百四条の規定は、財産分離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46조**(물상대위 규정의 준용) 제304조 규정은 재산분리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四十七条（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する弁済） 相続人は、第九百四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項の期間の満了前には、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して弁済を拒むことができる。 ２　財産分離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相続人は、第九百四十一条第二項の期間の満了後に、相続財産をもって、財産分離の請求又は配当加入の申出をした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それぞれその債権額の割合に応じて弁済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優先権を有する債権者の権利を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 ３　第九百三十条から第九百三十四条まで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4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① 상속인은 제94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재산분리청구가 있는 때에 상속인은 제941조제2항의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청구 또는 배당가입신청을 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게 각각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931조부터 제934조까지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四十八条（相続人の固有財産からの弁済） 財産分離の請求をした者及び配当加入の申出をした者は、相続財産をもって全部の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場合に限り、相続人の固有財産について	**제948조**(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의 변제) 재산분리청구를 한 자 및 배당가입신청을 한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相続人の債権者は、その者に先立って弁済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第九百四十九条（財産分離の請求の防止等） 相続人は、その固有財産をもって相続債権者若しくは受遺者に弁済をし、又はこれに相当の担保を供して、財産分離の請求を防止し、又はその効力を消滅させ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相続人の債権者が、これによって損害を受けるべきことを証明して、異議を述べ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949조**(재산분리청구의 방지 등)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변제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재산분리청구를 방지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따라 손해를 입을 것을 증명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九百五十条（相続人の債権者の請求による財産分離） 相続人が限定承認をすることができる間又は相続財産が相続人の固有財産と混合しない間は、相続人の債権者は、家庭裁判所に対して財産分離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第三百四条、第九百二十五条、第九百二十七条から第九百三十四条まで、第九百四十三条から第九百四十五条まで及び第	**제950조**(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재산분리) 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합하기 전에는 가정재판소에 대하여 재산분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304조, 제925조, 제927조부터 제934조까지, 제943조부터 제945조까지 및 제948조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九百四十八条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ただし、第九百二十七条の公告及び催告は、財産分離の請求をした債権者がしなければならない。	준용한다. 다만, 제927조의 공고 및 최고는 재산분리청구를 한 채권자가 하여야 한다.
第六章 相続人の不存在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第九百五十一条（相続財産法人の成立） 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相続財産は、法人とする。	**제951조**(상속재산법인의 성립)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은 법인으로 한다.
第九百五十二条（相続財産の管理人の選任） 前条の場合には、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って、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規定により相続財産の管理人を選任し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遅滞なくこれ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52조**(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① 제951조의 경우에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三条（不在者の財産の管理人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二十七条から第二十九条までの規定は、前条第一項の相続財産の管理人（以下この章におい	**제953조**(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제952조제1항의 상속재산 관리인(이하 이 장에서 “상속재

て単に「相続財産の管理人」という。）について準用する。	산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五十四条（相続財産の管理人の報告） 相続財産の管理人は、相続債権者又は受遺者の請求があるときは、その請求をした者に相続財産の状況を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54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보고)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수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한 자에게 상속재산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五条（相続財産法人の不成立） 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きは、第九百五十一条の法人は、成立しなかったものとみなす。ただし、相続財産の管理人がその権限内でした行為の効力を妨げない。	**제955조**(상속재산법인의 불성립)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때에 제951조의 법인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재산 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第九百五十六条（相続財産の管理人の代理権の消滅） 相続財産の管理人の代理権は、相続人が相続の承認をした時に消滅する。 ２　前項の場合には、相続財産の管理人は、遅滞なく相続人に対して管理の計算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56조**(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 ① 상속재산 관리인의 대리권은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재산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七条（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する弁済） 第九百五十二条第二項の公告があった後二箇月以内に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らなかったときは、相続財産の管理人は、遅滞なく、すべての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に対し、一定の期間内にその請求の申出をすべき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期間は、二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제957조**(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한 변제) ① 제952조제2항의 공고 후 2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지지 않은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모든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그 청구를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第九百二十七条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及び第九百二十八条から第九百三十五条まで（第九百三十二条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② 제9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28조부터 제935조까지(제932조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五十八条（相続人の捜索の公告） 前条第一項の期間の満了後、なお相続人のあることが明らかでないときは、家庭裁判所は、相続財産の管理人又は検察官の請求によって、相続人があるならば一定の期間内にその権利を主張すべき旨を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そ	**제958조**(상속인 수색 공고) 제957조제1항의 기간 만료 후에도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 관리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

の期間は、六箇月を下ることができない。	야 한다.
第九百五十八条の二（権利を主張する者がない場合） 前条の期間内に相続人としての権利を主張する者がないときは、相続人並びに相続財産の管理人に知れなかった相続債権者及び受遺者は、その権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58조의2**(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958조의 기간 내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이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第九百五十八条の三（特別縁故者に対する相続財産の分与） 前条の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家庭裁判所は、被相続人と生計を同じくしていた者、被相続人の療養看護に努めた者その他被相続人と特別の縁故があった者の請求によって、これらの者に、清算後残存すべき相続財産の全部又は一部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請求は、第九百五十八条の期間の満了後三箇月以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58조의3**(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① 가정재판소는 제958조의2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그 밖에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958조의 기간 만료 후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第九百五十九条（残余財産の国庫への帰属） 前条の規定により処分されなか	**제959조**(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제958조의3 규정에 따라 처분

った相続財産は、国庫に帰属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九百五十六条第二項の規定を準用する。	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이 경우에 제956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第七章 遺言	**제7장 유언**
第一節 総則	**제1절 총칙**
第九百六十条（遺言の方式） 遺言は、この法律に定める方式に従わなければ、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60조**(유언의 방식) 유언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第九百六十一条（遺言能力） 十五歳に達した者は、遺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961조**(유언능력) 15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다.
第九百六十二条 第五条、第九条、第十三条及び第十七条の規定は、遺言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제96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및 제17조 규정은 유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九百六十三条 遺言者は、遺言をする時においてその能力を有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63조** 유언자는 유언을 할 때에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
第九百六十四条（包括遺贈及び特定遺贈）	**제964조**(포괄유증 및 특정유증)

遺言者は、包括又は特定の名義で、その財産の全部又は一部を処分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遺留分に関する規定に違反することができない。	유언자는 포괄 또는 특정 명의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지 못한다.
第九百六十五条（相続人に関する規定の準用） 第八百八十六条及び第八百九十一条の規定は、受遺者について準用する。	**제965조**(상속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86조 및 제891조의 규정은 수유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六十六条（被後見人の遺言の制限） 被後見人が、後見の計算の終了前に、後見人又はその配偶者若しくは直系卑属の利益となるべき遺言をしたときは、その遺言は、無効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直系血族、配偶者又は兄弟姉妹が後見人である場合には、適用しない。	**제966조**(피후견인의 유언 제한) ① 피후견인이 후견 계산 종료 전에 후견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이익이 될 유언을 한 때에는 그 유언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유언은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二節 遺言の方式	**제2절 유언의 방식**
第一款 普通の方式	**제1관 보통방식**
第九百六十七条（普通の方式による遺言の種類）	**제967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의 종류)

遺言は、自筆証書、公正証書又は秘密証書によっ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特別の方式によることを許す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九百六十八条（自筆証書遺言） 自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遺言者が、その全文、日付及び氏名を自書し、これに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２　自筆証書中の加除その他の変更は、遺言者が、その場所を指示し、これを変更した旨を付記して特にこれに署名し、かつ、その変更の場所に印を押さ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제968조**(자필증서유언) ① 자필증서로 유언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전문, 일자 및 성명을 자필로 쓰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자필증서 내용의 추가·삭제, 그 밖의 변경은 유언자가 그 장소를 지시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을 부기하고 서명하며, 그 변경 장소에 날인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九百六十九条（公正証書遺言） 公正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次に掲げる方式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証人二人以上の立会いがあること。 二　遺言者が遺言の趣旨を公証人に口授すること。 三　公証人が、遺言者の口述を筆記し、これを遺言者及び証人に読み聞かせ、又は閲覧させること。	**제969조**(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할 것 2.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공증인에게 구수(口授)할 것 3.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四 遺言者及び証人が、筆記の正確なことを承認した後、各自これ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ただし、遺言者が署名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公証人がその事由を付記して、署名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五 公証人が、その証書は前各号に掲げる方式に従って作ったものである旨を付記して、これ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	4. 유언자 및 증인이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이에 서명하고 날인할 것. 다만,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5. 공증인이 그 증서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부기하고 이에 서명 날인할 것
第九百六十九条の二（公正証書遺言の方式の特則） 口がきけない者が公正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場合には、遺言者は、公証人及び証人の前で、遺言の趣旨を通訳人の通訳により申述し、又は自書して、前条第二号の口授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ける同条第三号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号中「口述」とあるのは、「通訳人の通訳による申述又は自書」とする。 ２ 前条の遺言者又は証人が耳が聞こえない者である場合には、公証人は、同条第三号に規定する筆記した内容を通訳人の通訳	**제969조의2**(공정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① 언어 장애가 있는 자가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거나 자필로 작성하여 제969조제2호의 구수를 대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3호 규정의 적용은 동호 중 “구술”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한 진술 또는 자필로 작성”으로 한다. ② 제969조의 유언자 또는 증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 공증인은 동조 제3호의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により遺言者又は証人に伝えて、同号の読み聞かせ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3 公証人は、前二項に定める方式に従って公正証書を作ったときは、その旨をその証書に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유언자 또는 증인에게 전달하여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증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第九百七十条（秘密証書遺言） 秘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には、次に掲げる方式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遺言者が、その証書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 二 遺言者が、その証書を封じ、証書に用いた印章をもってこれに封印すること。 三 遺言者が、公証人一人及び証人二人以上の前に封書を提出して、自己の遺言書である旨並びにその筆者の氏名及び住所を申述すること。 四 公証人が、その証書を提出した日付及び遺言者の申述を封紙に記載した後、遺言者及び証人とともにこれに署名し、印を押すこと。 2 第九百六十八条第二項の規定は、秘密証書による遺言について準用する。	**제970조**(비밀증서유언) ① 비밀증서로 유언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유언자가 그 증서에 서명날인할 것. 2. 유언자가 그 증서를 봉하고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이를 봉인할 것 3. 유언자가 공증인 1명 및 증인 2명 이상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성명 및 주소를 진술할 것 4. 공증인이 그 증서를 제출한 일자 및 유언자의 진술을 겉봉에 기재한 후,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할 것 ② 제968조제2항 규정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七十一条（方式に欠ける秘密証書遺言の効力） 秘密証書による遺言は、前条に定める方式に欠けるものがあっても、第九百六十八条に定める方式を具備しているときは、自筆証書による遺言としてその効力を有する。	**제971조**(방식에 흠결이 있는 비밀증서유언의 효력)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970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제968조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가진다.
第九百七十二条（秘密証書遺言の方式の特則） 口がきけない者が秘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する場合には、遺言者は、公証人及び証人の前で、その証書は自己の遺言書である旨並びにその筆者の氏名及び住所を通訳人の通訳により申述し、又は封紙に自書して、第九百七十条第一項第三号の申述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 ２　前項の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通訳人の通訳により申述したときは、公証人は、その旨を封紙に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第一項の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封紙に自書したときは、公証人は、その旨を封紙に記載し	**제972조**(비밀증서유언 방식의 특칙) ① 언어장애인이 비밀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자는 공증인 및 증인 앞에서 그 증서는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성명 및 주소를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거나 겉봉에 자필로 작성하여 제970조제1항제3호의 진술을 대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유언자가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한 때에 공증인은 그 내용을 겉봉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유언자가 겉봉에 자필로 작성한 때에 공증인은 그 내용을 겉봉에 기재

て、第九百七十条第一項第四号に規定する申述の記載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	하고 제970조제1항제4호의 진술의 기재를 대신하여야 한다.
第九百七十三条（成年被後見人の遺言） 成年被後見人が事理を弁識する能力を一時回復した時において遺言をするには、医師二人以上の立会いがなければならない。 ２　遺言に立ち会った医師は、遺言者が遺言をする時において精神上の障害により事理を弁識する能力を欠く状態になかった旨を遺言書に付記して、これに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秘密証書による遺言にあっては、その封紙にその旨の記載をし、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973조**(성년피후견인의 유언) ① 성년피후견인이 사리분별능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때에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언에 참여한 의사는 유언자가 유언을 할 때에 정신적 장애로 사리분별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그 겉봉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九百七十四条（証人及び立会人の欠格事由） 次に掲げる者は、遺言の証人又は立会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一　未成年者 二　推定相続人及び受遺者並びにこれらの配偶者及び直系血族	**제974조**(증인 및 참여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의 증인 또는 참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추정상속인 및 수유자,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三　公証人の配偶者、四親等内の親族、書記及び使用人	3. 공증인의 배우자, 4촌등 이내의 친족, 서기 및 사용인
第九百七十五条（共同遺言の禁止） 遺言は、二人以上の者が同一の証書で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975조**(공동유언의 금지) 유언은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서로 하지 못한다.
第二款　特別の方式	**제2관　특별방식**
第九百七十六条（死亡の危急に迫った者の遺言） 疾病その他の事由によって死亡の危急に迫った者が遺言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証人三人以上の立会いをもって、その一人に遺言の趣旨を口授して、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その口授を受けた者が、これを筆記して、遺言者及び他の証人に読み聞かせ、又は閲覧させ、各証人がその筆記の正確なことを承認した後、これに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제976조**(사망이 임박한 자의 유언) 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망이 임박한 자가 유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 3명 이상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고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거나 열람하게 하여 각 증인이 그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口がきけない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遺言をする場合には、遺言者は、証人の前で、遺言の趣旨を通訳人の通訳により申述して、同項の口授に代えなければ	② 언어장애인이 제1항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는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진술하여 동항의 구술을 대신하여야 한

ならない。 ３　第一項後段の遺言者又は他の証人が耳が聞こえない者である場合には、遺言の趣旨の口授又は申述を受けた者は、同項後段に規定する筆記した内容を通訳人の通訳によりその遺言者又は他の証人に伝えて、同項後段の読み聞かせに代えることができる。 ４　前三項の規定によりした遺言は、遺言の日から二十日以内に、証人の一人又は利害関係人から家庭裁判所に請求してその確認を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５　家庭裁判所は、前項の遺言が遺言者の真意に出たものであるとの心証を得なければ、これ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い。	다. ③ 제1항 후단의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유언의 취지의 구수 또는 진술을 받은 자는 동항 후단의 필기한 내용을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그 유언자 또는 다른 증인에게 전달하여 동항 후단의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언은 유언일부터 20일 내에 증인 1명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가정재판소는 제4항의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얻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第九百七十七条（伝染病隔離者の遺言） 伝染病のため行政処分によって交通を断たれた場所に在る者は、警察官一人及び証人一人以上の立会いをもって遺言書を作ることができる。	**제977조**(전염병 격리자의 유언) 전염병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교통이 단절된 장소에 있는 자는 경찰관 1명 및 증인 1명 이상의 참여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第九百七十八条（在船者の遺言）	**제978조**[재선자(在船者)의 유언]

船舶中に在る者は、船長又は事務員一人及び証人二人以上の立会いをもって遺言書を作ることができる。	선박 내에 있는 자는 선장 또는 사무원 1명 및 증인 2명 이상의 참여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第九百七十九条（船舶遭難者の遺言） 船舶が遭難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船舶中に在って死亡の危急に迫った者は、証人二人以上の立会いをもって口頭で遺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口がきけない者が前項の規定により遺言をする場合には、遺言者は、通訳人の通訳により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３　前二項の規定に従ってした遺言は、証人が、その趣旨を筆記して、これに署名し、印を押し、かつ、証人の一人又は利害関係人から遅滞なく家庭裁判所に請求してその確認を得なければ、その効力を生じない。 ４　第九百七十六条第五項の規定は、前項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979조**(선박조난자의 유언) ① 선박이 조난된 경우에 해당 선박 내에서 사망이 임박한 자는 증인 2명 이상의 참여로 구두로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언어장애인이 제1항 규정에 따라 유언을 하는 경우에 유언자는 통역인의 통역을 통하여 유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유언은 증인이 그 취지를 필기하고 이에 서명날인하며 증인 1명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체없이 가정재판소에 청구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976조제5항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八十条（遺言関係者の署名及び押印） 第九百七十七条及び第九百七十	**제980조**(유언관계자의 서명 및 날인) 제977조 및 제978조의 경우에

八条の場合には、遺言者、筆者、立会人及び証人は、各自遺言書に署名し、印を押さなければならない。	유언자, 작성자, 참여인 및 증인은 각자 유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第九百八十一条（署名又は押印が不能の場合） 第九百七十七条から第九百七十九条までの場合において、署名又は印を押すことのできない者があるときは、立会人又は証人は、その事由を付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981조**(서명 또는 날인 불능의 경우) 제977조부터 제979조까지의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 참여인 또는 증인은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第九百八十二条（普通の方式による遺言の規定の準用） 第九百六十八条第二項及び第九百七十三条から第九百七十五条までの規定は、第九百七十六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よる遺言について準用する。	**제982조**(보통방식에 의한 유언 규정의 준용) 제968조제2항 및 제973조부터 제975조까지의 규정은 제976조부터 제98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八十三条（特別の方式による遺言の効力） 第九百七十六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によりした遺言は、遺言者が普通の方式によって遺言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時から六箇月間生存するときは、その効力を生じない。	**제983조**(특별방식에 의한 유언의 효력) 제976조부터 제9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언은 유언자가 보통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6개월간 생존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九百八十四条（外国に在る日本人の遺言の方式） 日本の領事の駐在する地に在る日本人が公正証書又は秘密証書によって遺言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公証人の職務は、領事が行う。	**제984조**(재외 일본인의 유언방식) 일본 영사가 주재하는 지역에 있는 일본인이 공정증서 또는 비밀증서로 유언을 하고자 하는 때에 공증인의 직무는 영사가 한다.
第三節 遺言の効力	**제3절 유언의 효력**
第九百八十五条（遺言の効力の発生時期） 遺言は、遺言者の死亡の時からその効力を生ずる。 ２ 遺言に停止条件を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条件が遺言者の死亡後に成就したときは、遺言は、条件が成就した時からその効力を生ずる。	**제985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된 때에는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九百八十六条（遺贈の放棄） 受遺者は、遺言者の死亡後、いつでも、遺贈の放棄をすることができる。 ２ 遺贈の放棄は、遺言者の死亡の時にさかのぼってその効力を生ずる。	**제986조**(유증의 포기) ① 수유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유증의 포기는 유언자의 포기 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第九百八十七条（受遺者に対する遺贈の承認又は放棄の催告） 遺贈義務者（遺贈の履行をする義務を負う者をいう。以下この節において同じ。）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受遺者に対し、相当の期間を定めて、その期間内に遺贈の承認又は放棄をすべき旨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受遺者がその期間内に遺贈義務者に対してその意思を表示しないときは、遺贈を承認したものとみなす。	**제987조**(수유자에 대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최고) 유증의무자(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수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유자가 그 기간 내에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第九百八十八条（受遺者の相続人による遺贈の承認又は放棄） 受遺者が遺贈の承認又は放棄をしないで死亡したときは、その相続人は、自己の相続権の範囲内で、遺贈の承認又は放棄をす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988조**(수유자의 상속인에 의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수유자가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그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의 범위 내에서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第九百八十九条（遺贈の承認及び放棄の撤回及び取消し）	**제989조**(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철회 및 취소)

遺贈の承認及び放棄は、撤回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第九百十九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遺贈の承認及び放棄について準用する。	① 유증의 승인 및 포기는 철회하지 못한다. ② 제91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유증의 승인 및 포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九百九十条（包括受遺者の権利義務） 包括受遺者は、相続人と同一の権利義務を有する。	**제990조**(포괄수유자의 권리의무) 포괄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第九百九十一条（受遺者による担保の請求） 受遺者は、遺贈が弁済期に至らない間は、遺贈義務者に対して相当の担保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停止条件付きの遺贈についてその条件の成否が未定である間も、同様とする。	**제991조**(수유자에 의한 담보의 청구) 수유자는 유증이 변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에 대하여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같다.
第九百九十二条（受遺者による果実の取得） 受遺者は、遺贈の履行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時から果実を取得す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992조**(수유자에 의한 과실 취득) 수유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九百九十三条（遺贈義務者によ	**제993조**(유증의무자에 의한 비용

る費用の償還請求) 第二百九十九条の規定は、遺贈義務者が遺言者の死亡後に遺贈の目的物について費用を支出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2 果実を収取するために支出した通常の必要費は、果実の価格を超えない限度で、その償還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의 상환 청구) ① 제299조의 규정은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의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필요비는 과실의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第九百九十四条(受遺者の死亡による遺贈の失効) 遺贈は、遺言者の死亡以前に受遺者が死亡したときは、その効力を生じない。 2 停止条件付きの遺贈については、受遺者がその条件の成就前に死亡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994조**(수유자의 사망에 의한 유증의 실효)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수유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은 수유자가 그 조건의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九百九十五条(遺贈の無効又は失効の場合の財産の帰属) 遺贈が、その効力を生じないとき、又は放棄によってその効力を失ったときは、受遺者が受けるべきであったものは、相続人に帰属する。ただし、遺言者が	**제995조**(유증의 무효 또는 실효의 경우의 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때 또는 포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수유자가 받아야 할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

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九百九十六条（相続財産に属しない権利の遺贈） 遺贈は、その目的である権利が遺言者の死亡の時において相続財産に属しなかったときは、その効力を生じない。ただし、その権利が相続財産に属する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これ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996조**(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권리의 유증) 유증은 그 목적인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九百九十七条 相続財産に属しない権利を目的とする遺贈が前条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有効であるときは、遺贈義務者は、その権利を取得して受遺者に移転する義務を負う。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同項に規定する権利を取得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これを取得するについて過分の費用を要するときは、遺贈義務者は、その価額を弁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997조** ①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증이 제99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유효한 때에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유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를 취득하기에 지나친 비용이 필요할 때에 유증의무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九百九十八条（不特定物の遺贈義務者の担保責任）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受遺者がこれにつき第三者から追奪を受け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これに対して、売主と同じく、担保の責任を負う。 ２　不特定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物に瑕疵があったときは、遺贈義務者は、瑕疵のない物をもってこれに代えなければならない。	**제998조**(불특정물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수유자가 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추탈을 당한 때에 유증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을 진다. ② 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유증의무자는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대신하여야 한다.
第九百九十九条（遺贈の物上代位） 遺言者が、遺贈の目的物の滅失若しくは変造又はその占有の喪失によって第三者に対して償金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ときは、その権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 ２　遺贈の目的物が、他の物と付合し、又は混和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第二百四十三条から第二百四十五条までの規定により合成物又は混和物の単独所	**제999조**(유증의 물상대위) ① 유언자가 유증의 목적물의 멸실, 변조 또는 그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유증의 목적물이 다른 물건과 부합 또는 혼합한 경우에 유언자가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성물 또는 혼합물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

有者又は共有者となったときは、その全部の所有権又は持分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	자가 된 때에는 그 전부의 소유권 또는 지분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第千条（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財産の遺贈） 遺贈の目的である物又は権利が遺言者の死亡の時において第三者の権利の目的であるときは、受遺者は、遺贈義務者に対しその権利を消滅させるべき旨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제100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재산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千一条（債権の遺贈の物上代位） 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遺言者が弁済を受け、かつ、その受け取った物がなお相続財産中に在るときは、その物を遺贈の目的としたものと推定する。 ２　金銭を目的とする債権を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は、相続財産中にその債権額に相当する金銭がないときであっても、その金額を遺贈の目的とし	**제1001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변제를 받고 그 수취한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에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전이 없는 때라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たものと推定する。	것으로 추정한다.
第千二条（負担付遺贈） 負担付遺贈を受けた者は、遺贈の目的の価額を超えない限度においてのみ、負担した義務を履行する責任を負う。 ２ 受遺者が遺贈の放棄をしたときは、負担の利益を受けるべき者は、自ら受遺者とな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1002조**(부담부유증) ①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②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한 때에 부담 이익을 받아야 할 자는 스스로 수유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千三条（負担付遺贈の受遺者の免責） 負担付遺贈の目的の価額が相続の限定承認又は遺留分回復の訴えによって減少したときは、受遺者は、その減少の割合に応じて、その負担した義務を免れ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1003조**(부담부유증 수유자의 면책) 부담부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유류분 회복 소송으로 감소한 때에 수유자는 그 감소 비율에 따라 부담한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유언자가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第四節 遺言の執行	**제4절 유언의 집행**
第千四条（遺言書の検認） 遺言書の保管者は、相続の開始	**제1004조**(유언서의 검인) ① 유언서 보관자는 상속의 개

を知った後、遅滞なく、これを家庭裁判所に提出して、その検認を請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遺言書の保管者がない場合において、相続人が遺言書を発見した後も、同様とする。 2　前項の規定は、公正証書による遺言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3　封印のある遺言書は、家庭裁判所において相続人又はその代理人の立会いがなければ、開封することができない。	시를 안 후 지체없이 이를 가정재판소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언서 보관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유언서를 발견한 후에도 같다. ② 제1항 규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봉인된 유언서는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여야 개봉할 수 있다.
第千五条（過料） 前条の規定により遺言書を提出することを怠り、その検認を経ないで遺言を執行し、又は家庭裁判所外においてその開封をした者は、五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제1005조**(과태료)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유언서 제출을 게을리하고 그 검인을 거치지 않고 유언을 집행 또는 가정재판소 외부에서 개봉한 자는 5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第千六条（遺言執行者の指定） 遺言者は、遺言で、一人又は数人の遺言執行者を指定し、又はその指定を第三者に委託することができる。 2　遺言執行者の指定の委託を受けた者は、遅滞なく、その指定をして、これを相続人に通知し	**제1006조**(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유언자는 유언으로 1명 또는 다수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는 지체없이 지정하고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なければならない。 3 遺言執行者の指定の委託を受けた者がその委託を辞そうとするときは、遅滞なくその旨を相続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다. ③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千七条（遺言執行者の任務の開始） 遺言執行者が就職を承諾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任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07조**(유언집행자의 임무 개시)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즉시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第千八条（遺言執行者に対する就職の催告） 相続人その他の利害関係人は、遺言執行者に対し、相当の期間を定めて、その期間内に就職を承諾するかどうかを確答すべき旨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遺言執行者が、その期間内に相続人に対して確答をしないときは、就職を承諾したものとみなす。	**제1008조**(유언집행자에 대한 취임의 최고)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취임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그 기간 내에 상속인에 대하여 확답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第千九条（遺言執行者の欠格事由） 未成年者及び破産者は、遺言執行者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09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및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第千十条（遺言執行者の選任） 遺言執行者がないとき、又はなくなったときは、家庭裁判所は、利害関係人の請求によって、これを選任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10조**(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부존재하는 때 또는 부존재하게 된 때에 가정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第千十一条（相続財産の目録の作成） 遺言執行者は、遅滞なく、相続財産の目録を作成して、相続人に交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　遺言執行者は、相続人の請求があるときは、その立会いをもって相続財産の目録を作成し、又は公証人にこれを作成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11조**(상속재산의 목록 작성) ①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참여로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공증인에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千十二条（遺言執行者の権利義務） 遺言執行者は、相続財産の管理その他遺言の執行に必要な一切の行為をする権利義務を有する。 ２　第六百四十四条から第六百四十七条まで及び第六百五十条の規定は、遺言執行者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12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①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다. ② 제644조부터 제647조까지 및 제650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十三条（遺言の執行の妨害行	**제1013조**(유언 집행 방해행위의 금지)

為の禁止) 遺言執行者がある場合には、相続人は、相続財産の処分その他遺言の執行を妨げるべき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千十四条**(特定財産に関する遺言の執行) 前三条の規定は、遺言が相続財産のうち特定の財産に関する場合には、その財産についてのみ適用する。 **第千十五条**(遺言執行者の地位) 遺言執行者は、相続人の代理人とみなす。 **第千十六条**(遺言執行者の復任権) 遺言執行者は、やむを得ない事由がなければ、第三者にその任務を行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反対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遺言執行者が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第三者にその任務を行わせる場合には、相続人に対して、第百五条に規定する責任を負う。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처분, 그 밖에 유언 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14조**(특정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제1011조부터 제1013조까지의 규정은 유언이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에 관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1015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제1016조**(유언집행자의 복임권) ①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그 임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언집행자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제105조의 책임을 진다.

第千十七条（遺言執行者が数人ある場合の任務の執行） 遺言執行者が数人ある場合には、その任務の執行は、過半数で決す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２　各遺言執行者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保存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17조**(유언집행자가 다수인경우의 임무의 집행) ①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임무의 집행은 과반수로 정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다. ② 각 유언집행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第千十八条（遺言執行者の報酬） 家庭裁判所は、相続財産の状況その他の事情によって遺言執行者の報酬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報酬を定め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２　第六百四十八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は、遺言執行者が報酬を受けるべき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18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가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상황,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4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十九条（遺言執行者の解任及び辞任） 遺言執行者がその任務を怠ったときその他正当な事由があると	**제1019조**(유언집행자의 해임 및 사임) ①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은

きは、利害関係人は、その解任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遺言執行者は、正当な事由があるとき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得て、その任務を辞することができる。	그 해임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임할 수 있다.
第千二十条（委任の規定の準用） 第六百五十四条及び第六百五十五条の規定は、遺言執行者の任務が終了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20조**(위임 규정의 준용) 제654조 및 제655조 규정은 유언집행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二十一条（遺言の執行に関する費用の負担） 遺言の執行に関する費用は、相続財産の負担とする。ただし、これによって遺留分を減ず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21조**(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의 부담)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한다. 다만, 이로써 유류분을 줄이지 못한다.
第五節 遺言の撤回及び取消し	**제5절 유언의 철회 및 취소**
第千二十二条（遺言の撤回） 遺言者は、いつでも、遺言の方式に従って、その遺言の全部又は一部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22조**(유언의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방식에 따라 그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第千二十三条（前の遺言と後の遺	**제1023조**(전후 유언의 저촉 등)

言との抵触等) 前の遺言が後の遺言と抵触するときは、その抵触する部分については、後の遺言で前の遺言を撤回したもの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遺言が遺言後の生前処分その他の法律行為と抵触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① 전후의 유언이 서로 저촉될 때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은 이후 유언으로 이전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규정은 유언이 유언 후의 생전 처분, 그 밖의 법률 행위와 저촉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二十四条（遺言書又は遺贈の目的物の破棄） 遺言者が故意に遺言書を破棄したときは、その破棄した部分については、遺言を撤回したものとみなす。遺言者が故意に遺贈の目的物を破棄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1024조**(유언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의 파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서를 파기한 때에 그 파기된 부분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증의 목적물을 파기한 때에도 같다.
第千二十五条（撤回された遺言の効力） 前三条の規定により撤回された遺言は、その撤回の行為が、撤回され、取り消され、又は効力を生じなくなるに至ったときであっても、その効力を回復しない。ただし、その行為が詐欺又は強迫によ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제1025조**(철회된 유언의 효력) 제1022조부터 제10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철회된 유언은 그 철회의 행위가 철회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때라도 그 효력이 회복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6조(유언의 철회권 포기의

第千二十六条（遺言の撤回権の放棄の禁止） 遺言者は、その遺言を撤回する権利を放棄することができない。	금지）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第千二十七条（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 負担付遺贈を受けた者がその負担した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相続人は、相当の期間を定めてその履行の催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期間内に履行がないときは、その負担付遺贈に係る遺言の取消しを家庭裁判所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27조**(부담부유증에 관련된 유언의 취소) 부담부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때에는 그 부담부유증에 관련된 유언의 취소를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第八章 遺留分	**제8장 유류분**
第千二十八条（遺留分の帰属及びその割合） 兄弟姉妹以外の相続人は、遺留分として、次の各号に掲げる区分に応じて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割合に相当する額を受ける。 一 直系尊属のみが相続人である場合 被相続人の財産の三分の一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형제자매 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1. 직계존속만 상속인인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3분의1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 :

二　前号に掲げる場合以外の場合　被相続人の財産の二分の一 **第千二十九条**　（遺留分の算定） 遺留分は、被相続人が相続開始の時において有した財産の価額にその贈与した財産の価額を加えた額から債務の全額を控除して、これを算定する。 ２　条件付きの権利又は存続期間の不確定な権利は、家庭裁判所が選任した鑑定人の評価に従って、その価格を定める。 **第千三十条** 贈与は、相続開始前の一年間にしたものに限り、前条の規定によりその価額を算入する。当事者双方が遺留分権利者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知って贈与をしたときは、一年前の日より前にした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第千三十一条**　（遺贈又は贈与の減殺請求） 遺留分権利者及びその承継人は、遺留分を保全するのに必要な限度で、遺贈及び前条に規定する贈与の減殺を請求すること	피상속인의 재산의 2분의1 **제1029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된 권리는 가정재판소가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을 정한다. **제1030조**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행한 것에 한하여 제1029조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입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날 이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같다. **제1031조**(유증 또는 증여의 감쇄청구) 유류분 권리자 및 그 승계인은 유류분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유증 및 제1030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

ができる。	
第千三十二条　（条件付権利等の贈与又は遺贈の一部の減殺） 条件付きの権利又は存続期間の不確定な権利を贈与又は遺贈の目的と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贈与又は遺贈の一部を減殺すべきときは、遺留分権利者は、第千二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定めた価格に従い、直ちにその残部の価額を受贈者又は受遺者に給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32조**(조건부 권리 등의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 감쇄) 조건부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된 권리를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 증여 또는 유증의 일부를 감쇄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제10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한 가격에 따라 즉시 그 남은 부분의 가액을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급부하여야 한다.
第千三十三条　（贈与と遺贈の減殺の順序） 贈与は、遺贈を減殺した後でなければ、減殺することができない。	**제1033조**(증여와 유증의 감쇄 순서) 증여는 유증을 감쇄한 후에만 감쇄할 수 있다.
第千三十四条　（遺贈の減殺の割合） 遺贈は、その目的の価額の割合に応じて減殺する。ただし、遺言者がその遺言に別段の意思を表示したときは、その意思に従う。	**제1034조**(유증의 감쇄 비율) 유증은 그 목적의 가액 비율에 따라 감쇄한다. 다만, 유언자가 그 유언에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제1035조(증여의 감쇄 순서)

第千三十五条（贈与の減殺の順序） 贈与の減殺は、後の贈与から順次前の贈与に対してする。	증여의 감쇄는 나중 증여부터 순서대로 이전 증여에 대하여 한다.
第千三十六条（受贈者による果実の返還） 受贈者は、その返還すべき財産のほか、減殺の請求があった日以後の果実を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36조**(수증자에 의한 과실의 반환) 수증자는 그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 외에 감쇄 청구가 있는 날 이후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第千三十七条（受贈者の無資力による損失の負担） 減殺を受けるべき受贈者の無資力によって生じた損失は、遺留分権利者の負担に帰する。	**제1037조**(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한 과실의 부담) 감쇄를 받아야 하는 수증자의 무자력에 의하여 발생한 과실은 유류분 권리자의 부담에 귀속한다.
第千三十八条（負担付贈与の減殺請求） 負担付贈与は、その目的の価額から負担の価額を控除したものについて、その減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제1038조**(부담부증여의 감쇄 청구) 부담부증여는 그 목적 가액에서 부담 가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그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
第千三十九条（不相当な対価による有償行為） 不相当な対価をもってした有償	**제1039조**(부당한 대가에 의한 유상행위) 부당한 대가로써 한 유상행위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行為は、当事者双方が遺留分権利者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知ってしたものに限り、これを贈与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いて、遺留分権利者がその減殺を請求するときは、その対価を償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	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에 한하여 이를 증여로 본다. 이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가 그 감쇄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상환하여야 한다.
第千四十条　(受贈者が贈与の目的を譲渡した場合等) 減殺を受けるべき受贈者が贈与の目的を他人に譲り渡したときは、遺留分権利者にその価額を弁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譲受人が譲渡の時において遺留分権利者に損害を加え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は、遺留分権利者は、これに対しても減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は、受贈者が贈与の目的につき権利を設定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40조**(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등) ① 감쇄를 받아야 하는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 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이에 대해서도 감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四十一条　(遺留分権利者に対する価額による弁償) 受贈者及び受遺者は、減殺を受けるべき限度において、贈与又は遺贈の目的の価額を遺留分権利者に弁償して返還の義務を免れることができる。	**제1041조**(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액에 의한 변상) ① 수증자 및 수유자는 감쇄받아야 할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변상하여 반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은 제1040조제1

2　前項の規定は、前条第一項ただし書の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항 단서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千四十二条　（減殺請求権の期間の制限） 減殺の請求権は、遺留分権利者が、相続の開始及び減殺すべき贈与又は遺贈があったことを知った時から一年間行使しないときは、時効によって消滅する。相続開始の時から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제1042조**(감쇄청구권의 기간의 제한) 감쇄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감쇄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때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
第千四十三条　（遺留分の放棄） 相続の開始前における遺留分の放棄は、家庭裁判所の許可を受けたときに限り、その効力を生ずる。 2　共同相続人の一人のした遺留分の放棄は、他の各共同相続人の遺留分に影響を及ぼさない。	**제1043조**(유류분의 포기) ① 상속의 개시 전의 유류분의 포기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동상속인의 1명이 한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千四十四条（代襲相続及び相続分の規定の準用） 第八百八十七条第二項及び第三項、第九百条、第九百一条、第九百三条並びに第九百四条の規定は、遺留分について準用する。	**제1044조**(대습상속 및 상속분 규정의 준용) 제887조제2항 및 제3항, 제900조, 제901조, 제903조 및 제904조 규정은 유류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